

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명칭)**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라 부른다.
- 제3조(소재)** 본 연구소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와 메디컬캠퍼스 내에 둔다.
(개정 2012.08.10)
- 제4조(연구소의 운영목적)** 본 연구소는 산업체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 개발을 통하여 산업기술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업무

- 제5조(소장)** ①본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제6조(연구협력부)** ①본 연구소에는 연구협력부를 둘 수 있다. 연구협력부장은 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②본 연구소의 행정 및 대외 업무관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사무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- 제7조(임직원의 직무)** ①소장은 본 연구소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여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②연구협력부장은 소장을 보좌하며, 소관업무를 처리한다.
- 제8조(업무)** ①가천대학교 산·학협동 공동연구 업무 총괄
②산업체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력 및 상호기술정보 교류
③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 3 장 운영위원회

5-1-7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제9조(설치)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0조(조직)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본 연구소 소장으로 하며, 간사는 연구협력부장으로 한다.

③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11조(심의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
3. 본 연구소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4.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12조(소집과 회의)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,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(세입·세출) ①본 연구소의 세입은 교비지원금, 연구활동기부금, 연구개발용역보전비, 산업체출연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한다.

②본 연구소의 세출은 경상비 및 연구개발용 기기 구입이나 계획연구 수행 등 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.

③본 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연구 용역 수주에서 연구비의 일정액을 연구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제14조(회계년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15조(운영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